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69회 제1차 정례회(2024. 6. 17.)

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복지도시위원회

#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24-72
----------	-------

2024. 6. 17.  
전문위원 신준호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제 안 자 : 김승수 의원 외 10명
- 나. 제 안 일 : 2024. 5. 24.
- 다. 회 부 일 : 2024. 5. 28.

## 2. 제안이유

조례 제정 목적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시하고 구생활환경과 환경오염 범위에 일조, 인공조명, 화학물질 등 관리가 필요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구민의 환경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 목적을 수정함.(안 제1조)
- 나. 생활환경 정의에 “일조,” “인공조명”, “화학물질”을 포함하고, 환경오염 정의에 “일조 방해”, “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“를 포함시킴.(안 제4조제3호 및 제4호)
- 다. 조례 제명 및 기타 조항의 자구수정 및 경미한 사항 수정
  - 「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」 →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 기본조례」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환경정책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기타

1) 입법예고 : 2024. 5. 17 ~ 2024. 5. 23. (의견 없음)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개정조례안의 개요

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정합성을 이루고, 국민의 환경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일조, 화학물질, 인공조명에 따른 빛공해를 생활환경과 환경오염 범위에 추가하는 것임.

### 나. 주요 개정 조문

- 안 제1조 목적은 상위법령을 명확히 하여 조례 입법 동기를 명확히 하였음.
- 안 제4조제3호 및 제4호 정의는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뜻하는 "생활환경"의 정의에 일조 및 인공조명, 화학물질을 추가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인 "환경오염" 정의에 일조방해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추가하였음.

### 다. 종합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환경정책기본법」 등 상위법령에서 다루고

있는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의 완  
성도를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는 등 국민의 환경권을 적극적으로 보  
호하고자 하는 사항임.

- "생활환경" 정의에 일조, 인공조명, 화학물질 등 일상생활과 관계되  
는 환경에 포함하는 것은 「건축법」<sup>1)</sup>,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 
방지법」<sup>2)</sup>, 「화학물질관리법」<sup>3)</sup>에서 각 요소들에 관하여 구체적  
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, 현대사회에서 사람이 자연과 어우러  
져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관리되어야 하는  
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이므로 환경정책의 대상임을 명확  
히 하는 차원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이며,
- "환경오염"에 일조방해,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(이하 "빛공해" 라  
한다.) 를 포함하는 것은 현행 법령 및 조례상 환경오염이란 '사람  
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어떠한 상태'를 의미하는데, 일조  
방해 및 빛공해는 사람의 신체적, 정신적 환경피해 발생의 원인이  
로 작용하는 것으로 기정 "환경오염"의 정의와 명확히 부합하지 않  
는 것처럼 보이나, 법에서 개인의 재산적·인격적 이익이 침해된다

1) 「건축법」 제61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)

2)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"(이하 "빛공해"라 한다)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  
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.

3)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1조(목적)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(危害)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 
관리하는 한편,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  
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[개정 2020.5.26 제17326호(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 
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)]

1. "화학물질"이란 원소·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  
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.

는 측면에서 환경오염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체계상 어긋남이  
없고 마포구 환경정책의 기본방향 수립에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.

- 기타 제명 및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.

전문위원	신 준 호
정책지원관	박 성 호

## [관 계 법 령]

### 「환경정책기본법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"생활환경"이란 대기, 물, 토양, 폐기물, 소음·진동, 악취, 일조(日照), 인공조명,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.
4. "환경오염"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, 수질오염, 토양오염, 해양오염, 방사능오염, 소음·진동, 악취, 일조 방해,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.